

●국토교통부령 제1270호

●환경부령 제618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환경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2년	1년

			초과인 자동차	
		중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별표 1 비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같은 비고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9호(중전의 제8호) 전단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경형·소형 화물자동차 중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차령이 3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서 4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로 축소하고, 비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시기를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5년을 초과할 때에서 8년을 초과할 때로 늦추는 등 일부 자동차의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고, 차종, 사업용 여부, 자동차 규모 등을 기준으로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기준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